
2021년도

농활용(농이모작) 직접지불사업 시행지침서

2021. 1.



농림축산식품부
공익직불정책과

목 차

①	논활용(논이모작) 직접지불사업 시행지침	1
Ⅰ.	사업개요	1
Ⅱ.	자격 여건 등 주요내용	2
	[참고1] 지급대상 농지에 대한 적법한 권원을 갖는 자의 판단	5
	[참고2] 농촌지역 기준	8
	[참고3]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의 자격요건	9
	[참고4] 논활용직접지불금 지급제한의 세부기준 등	12
	[참고5] 부정수급 처리 절차	13
	[참고6] 부정수급 신고센터(1644-8778) 운영	14
Ⅲ.	사업추진체계 및 절차	15
	[참고7] 신청 시 제출서류	20
	[참고8] 논활용직접지불금 심사관리위원회	25
②	별지 서식	29

· 논활용(논이모작) 직접지불사업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부 공익직불정책과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농림축산식품부	공익직불정책과	과장 정혜련	044-201-1771
		서기관 김동환	044-201-1776
		주무관 이상인	044-201-1779
		지자체 및 민원 담당 사무관	044-201-1781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직불관리과	공익직불 상담 및 부당수령	1644-8778
농림수산식품교육 문화정보원	농업정보실 (Agrix)	시스템 상담지원	1588-6830

| 사업개요

1. 사업목적 : 논을 활용·관리하는 농업인 등의 소득안정과 농업·농촌 공익기능 및 식량자급률 증진
2. 근거법령 :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3. 재원구성 및 예산 : 국고 100%, 예산 46,200백만원(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기금)

4. 추진경과

- ('12) 밭농업(19개 품목) 직접지불제 도입 * 「농산물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제정
- ('14) 논이모작직불제 신설 도입 * 「농산물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제정
- ('16) 밭 고정직불과 논이모작직불로 개편 * 「농산물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개정
- ('20) 쌀직불·밭고정·조건불리직불을 '기본형 공익직불제'로 통합, 논이모작 직불은 '선택형 공익직불제'로 개편 시행

*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전부 개정('19.12.27)

1 지급대상 농지

-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농어업경영체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등록된 농지(「농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토지)
- ☐ 지목과 상관없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법상 농지로서 전년도 10월부터 해당연도 6월까지의 기간에 밭농업에 이용되는 논(畓)

- ① 종전의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농지
 - * 종전의 쌀고정직불금 또는 밭고정직불금 지급대상 농지로서 현재 논으로 활용될 수 있는 농지
- ② 1998년 1월 1일 이후 조성된 농지로서 법 제12조제1호에 따라 현재 논으로 활용될 수 있는 농지의 형상 및 기능을 유지하고 있는 농지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5조	「농업·농촌 공익직불법 시행령」 제12조
논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등에 대한 농업소득 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는 1998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 논농업(벼, 연근, 미나리, 왕골을 재배하는 농업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이용된 농지(「농지법」에 따른 농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밭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등에 대한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는 2012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 밭농업에 이용된 농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의 형상(形狀) 및 기능을 유지할 것 1. 농작물의 생산이 가능하도록 토양을 유지·관리할 것 2. 농작물을 재배하거나, 휴경하는 경우에는 연간 1회 이상 경운(耕耘, 논밭을 갈고 김을 맴)할 것 3. 이웃한 농지등과 구분이 가능하도록 경계를 설치하고 관리할 것 4. 농업에 이용되는 농지등 주변의 용수로·배수로를 유지·관리할 것

- ☐ 다만, 아래에 해당하는 농지에 대해서는 지급대상 농지에서 제외

- ① 「하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하천구역에 있는 농지
 - * 다만 등록신청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까지 보상받지 않은 토지분해에 대해 시장·군수가 1년 이상 밭농업에 이용할 수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급대상 농지로 인정
- ② 「농지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농지처분명령을 받은 농지
- ③ 부정수급(거짓·부정한 방법으로 직불금을 등록·수령하거나 농지를 분할 등)으로 등록 제한 기간 중에 있는 자가 소유한 토지
 - * 제3자에게 임대하거나 등록제한 처분 이후 새로 구입한 농지등으로 등록제한 기간 내에 있는 자가 소유한 모든 농지를 의미

- ④ 「농지법」 제34조·제35조 또는 제43조에 따라 **농지전용 허가**를 받거나 **농지전용 신고**를 한 농지와 **농지전용 협의**를 거친 농지(농지전용허가·신고·협의를 의제되는 경우 포함)
- * 「농지법」 제39조(전용허가의 취소 등)에 따라 농지전용 허가받은 농지가 허가를 취소하거나 관계 공사의 중지, 조업의 정지, 사업규모의 축소 또는 사업계획의 변경,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받은 경우는 **지급대상 농지에 포함**
- ⑤ 「농지법」 제36조·제36조의2에 따라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를 받거나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협의를 거친 농지(농지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협의를 의제되는 경우 포함)
- * 「농지법」 제39조(전용허가의 취소 등)에 따라 타용도 일시사용허가를 받은 농지가 허가를 취소하거나 관계 공사의 중지, 조업의 정지, 사업규모의 축소 또는 사업계획의 변경,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받은 경우는 **지급대상 농지에 포함**
- ⑥ 아래에 해당하는 농지는 **지급대상 농지**에서 **제외**하되, 등록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까지 지구·지역·단지의 농지 중 **보상받지 아니한 농지**분에 대해 시장·군수·구청장이 1년 이상 농업에 이용할 수 있다고 인정할 때는 **지급대상 농지**로 인정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거지역, 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의 토지
 -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부터 제8조까지 지정된 산업단지 또는 농공단지의 토지
 - △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에 따라 지정된 택지개발지구의 토지
 - △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각종 개발사업의 예정지로 지정되거나 고시된 지역의 토지
- ⑦ 자기 소유가 아닌 농지를 **지급대상** 확정(5.31일 이전) 전까지 “**적법한 권원 없이 점유 또는 사용한 농지**”가 아님을 증명하지 못한 경우 ☐ (참고 1)
- △ 사실상의 소유자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 그 소유자에게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 계약 등을 통해 적법한 권원을 확보하였음을 증명
- ⑧ 논활용직불 등록한 농지 중 논활용직불 **지급대상** 확정(5.31일 이전) 이전에 농업경영체에서 삭제된 농지
- ⑨ 중복지급이 불가능한 경관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

⑩ 지급대상 농지를 **중복신청**(논활용직불 신청면적합이 공부상 농지면적을 초과)한 경우

△ 공동소유, 공동경작하는 경우 논활용직불 등록자의 **지분의 면적**을 인정

△ 같은 농지를 중복하여 등록한 경우 지급대상자 확정(5.31일) 이전에 지 자체는
실경작 확인 후 실제 경작자만 인정 → **5.31일 이후 중복신청필지는 모두
지급대상에서 제외**

⑪ 지급대상 농지(필지기준) 중 “**농지의 형상**”이 유지되지 아니하는 면적(폐경)은
지급대상 면적에서 제외

❶ 농작물의 생산이 가능하도록 토양을 유지·관리하지 않은 경우는 **해당 면적** 전체 제외

* 묘지, 폐기물·모래·자갈 적치, 콘크리트 등 타설, 골재 채취장·양어장, 건축물부지·주차장,
정원(조경수, 관목수 등 식재), 공사장 등

❷ 이웃한 농지등과 구분이 가능하도록 경계를 설치하지 않고, 주변의 용수로 배수로 등을
유지·관리하지 않은 경우는 **해당 농지** 50% 감액 후 지급

△ 논활용직불 신청한 농지가 필지 단위로 경작할 수 없는 농지(전체 폐경, 호수 등)이고
종전에 직불금을 수령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부정수급으로 조치

※ 논활용직불 등록자는 경작에 이용할 수 없는 부분은 제외하여 신청하고, 사전에
농업경영체 등록·변경을 하여 현행화 필요

농지관련 자격유지 기간 참고

구분(월)	1	2	3	4	5	6	7	8	9	10	11	12
농업경영체 등록 정보 (농업인, 신청농지)	 (신청 2.1 ~ 유지기간 5.31.)											충족
	 (신청 후 경영정보 삭제 또는 삭제 후 재등록)											미충족
농지정보 변동 등 (농지 분할, 합필 등)	 (신청 2.1 ~ 유지기간 5.31.)											충족
	 (신청 2.1. ~ 자격요건 5.31.까지 유지 후 농지 분할·합필)											충족
	 (신청 후 자격요건 유지기간 내 농지 정보 변동)											재확인*

* **(재확인)** 당초 신청된 필지 중 자격요건 유지기간(~5.31) 내 농지정보가 변동 된 경우 ①**농업경영체
정보 변경(현행화)** 여부 ②**직불제 등록사항 변경** 여부 확인 필요(미조치 시 대량검증에서 제외)

☞ 지급대상 농지에 대하여 실경작하는 자는 “적법한 권원”을 확보하였음을 증명

1 (자경) 지급대상 농지의 소유자(토지대장, 등기부등본상 소유자)일 경우

- 소유자가 다수인 공유재산일 경우 논활용직불 등록자의 본인 지분만큼의 면적에 한하여 지급대상 면적으로 인정

2 (사실상의 소유자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등을 통해 그 소유자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 계약 등을 통해 적법한 권원을 확보하였음을 증명

☞ 논활용직불 등록자와 해당 필지의 소유자가 상이하거나, 임대차 기간이 신청·접수 당시 종료된 경우 아래의 서류를 제출해야 함.

- 임대차계약의 당사자는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 계약증서를 읍·면·동의 장에게 제출(「농지법」 시행규칙 제21조의2)
 - 공부상에 개인 등의 명의로 등재된 사실상의 중중재산으로서 중중소유임을 신고하지 아니하였을 때는 **공부상 소유자의 임대차계약**(‘96년 이전에 소유한 농지)
-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19조에 따라 농어촌공사를 통한 농지의 장기임대차사업 대상으로 하는 직불금 지급대상 농지 임대차계약
 - * 직업을 전환하거나 은퇴하려는 농업인의 농지나 그 밖의 임대차 대상의 농지
- 국공유지의 경우 「국유재산법」 제30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에 따라 국유재산을 사용허가 받은 농업인등이 ‘국유재산(유상, 무상) 대부계약서’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의2 참조) 등으로 증명

3 (사실상의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토지대장 상 중중명의로 되어 있는 경우 등에 한하여 해당 농지에 대한 농지의 경작권이 부여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공증된 중중회의록 + 경작사실확인서 등의 서류를 제출

② 지급대상 농업인 등

☐ 「농업경영체육성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변경등록 포함)한 농업인 및 농업법인(이하 '농업인등')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과 「농업경영체육성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법인

☐ 1천㎡ 이상(폐경 및 휴경 제외) 지급대상 농지(논)에서 해당 기간(전년 10월~6월까지) 동안 논활용(논이모작) 작물을 재배하고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 (① ~ ③ 중 1개 이상 충족)

* 지급대상자가 지급대상 농지에서 발농업에 종사하면서 지급대상 품목을 파종부터 수확까지 재배할 경우에 지급(녹비용으로 재배시 지급대상에서 제외)

① 농촌(「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에 주소 또는 주된 사무소를 둔 경우 ☐ (참고 2)

② 농촌 외의 지역에 주소 또는 주된 사무소를 둔 경우 「농업·농촌 공익직불법」 시행규칙 제33조에 따른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의 요건에 충족하는 자 ☐ (참고 3)

③ (승계자) 직전 연도 또는 등록연도에 논활용(이모작)직불 지급대상자로 등록한 자가 고령, 질병, 또는 부상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농업에 종사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한 경우, 해당 농지에서 계속 농업에 종사한 등록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으로 사유 발생 직전 1년 이상* 등록자와 주소를 같이 하고 계속 해당 농지에서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

* 치료를 목적으로 등록자의 주소가 이전되어 주소가 같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계속하여 주소를 같이 한 것으로 보고 해당 기간을 산입 가능

△ 승계자는 읍·면·동에 승계처리 요구 전까지 농업경영체 변경신고를 완료

△ 승계자는 지급대상 농업인 자격요건을 충족해야 함

△ 지급대상 농지가 임차인 경우에는 무단 점유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해야 함

△ 상속 등에 따른 승계자인 경우 지급대상 농지는 상속된 지분만큼만 인정하고, 상속되지 아니한 지분은 무단 점유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

△ 논활용직불 등록자가 사망하였으나 승계자가 없거나 승계자격요건이 맞지 아니할 경우 당해 연도 직불금 미지급

☐ 다만, 아래에 해당하는 농업인등은 지급대상 농업인등에서 제외

① 등록신청 직전 연도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원 이상인 등록자

* 「소득세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종합소득금액에서 「통계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작성·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농업(01) 및 임업(02)"으로 발생하는 소득을 제외한 금액을 의미(농업인만 적용)

② 등록 연도에 **논활용작물 재배 등에 이용**(폐경 및 휴경면적 제외)하는 농지의 면적이 1천㎡미만인 자

③ 「농업·농촌 공익직불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의 등록제한 기간 중에 있는 자

④ 논활용직불 부정수급 등으로 등록제한 기간 중인 자

* 부정수급 등으로 등록제한 기간은 월 단위가 아닌 **연 단위로 반영**

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보조사업 수행배제 등)에 따라 부정수급 등으로 **지급제한 명령**을 받은 자

⑥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79조에 따라 농식품부 재정사업의 부정수급 등으로 **지원제한을 3회 이상 받은 자**

⑦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35조제6항제3호에 따라 부정수급 등으로 인한 **환수금, 제재부가금 및 가산금 등의 전부를 납부하지 아니한 자**

직전 연도 또는 등록연도 논활용(이모작) 등록자의 승계처리

① 직전 논활용직불 지급 후 ~ 금년('21년) 신청·접수 전에 승계 사유 발생이 된 경우 논활용직불 신청·접수 전 농업경영정보를 수정하고 승계대상자로 접수

- 다만, 논활용직불 신청접수 당해 연도 이후에 승계('19년 승계사유발생 → '20년 논활용직불 미승계 및 미신청 → '21 논활용직불 신청)하여 신청하는 경우 신규대상자의 요건을 충족해야 함

② 논활용직불 등록 ~ 지급 전 승계 사유가 발생한 경우 기존 논활용직불 등록정보 변경

- 동일 경영체에 등록된 자가 승계하는 경우 기존 논활용직불 등록자를 승계대상자로 전환

- 다른 경영체에 등록한 자가 승계하는 경우 기존 논활용직불 등록정보를 삭제하고 승계대상에 따라

① 기존수혜자인 경우 해당 농지 추가 ② 경영체를 신규로 등록한 경우 승계처리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나목에 따른 농촌지역

[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15-171호, 2015. 12. 23.]

1. 읍·면의 지역
2.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2호나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에 따른 시의 지역 중 동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주거·상업·공업지역 외의 용도지역*
3.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2조제2항에 따른 자치구(「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자치구는 제외한다.)의 지역 중 동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다음 각 목의 용도지역
 - 가. 도시지역의 녹지지역 중 생산·보전녹지지역
 - 나. 관리지역 중 생산·보전관리지역
 - 다. 농림·자연환경보전지역
4.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조제3항제2호에 따라 2002.8.14.이후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호나목(1)의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된 집단취락지구지역(다만,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지역은 제외한다.)

◆ 시에 속한 경우 동지역 중 농촌지역☞ 녹지지역 전체(보전녹지지역, 생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자치구 중 수도권이 아닌 곳에 속한 경우 동지역 중 농촌지역☞ 녹지지역 중 보전녹지지역, 생산녹지지역☞ 관리지역 중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 수도권이 아닌 곳 : 2002.8.14.일 이후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어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된 집단취락지구지역

참고 3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의 자격요건'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서 정한 **농촌 외의 지역에 주소 또는 사무소를 둔 자**는 다음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 요건을 추가로 충족

- * 주소는 등록신청 당시를 기준으로 하며, 자격유지기간 내에 농촌지역에서 농촌 외의 지역으로 주소를 옮긴 경우에도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 요건을 추가로 충족하여야 함
- * 예외 : 후계농업경영인, 전업농업인, 전업농육성대상자, 2030세대 농지지원 대상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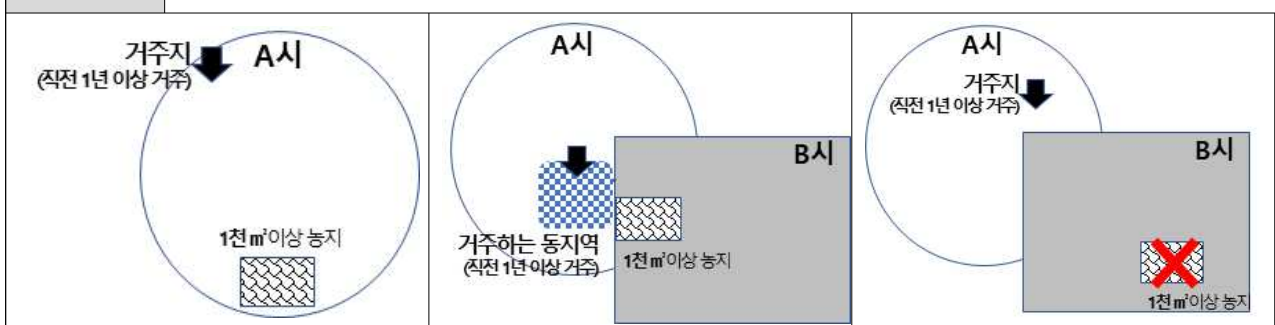
☑ 행정구역 개편으로 인하여 주소지가 변경되었더라도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의 요건을 갖추어야 함

- * 구 : 「지방자치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자치구(특별시 및 광역시의 구)를 의미
- * 해당 시·구 : 등록신청 당시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시·구를 의미
- * 연접한 읍·면·동 : 원칙적으로 「지방자치법」 제4조의2 규정에 의한 행정면·행정동(농업인에게 유리한 경우 법정면·동 적용)

※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의 자격요건에서 농지는 논·활용직불 지급대상 농지가 아니어도 됨. 다만, 논·활용직불 지급대상 농지 1천㎡ 이상은 있어야 함

- ① 신청연도의 직전 1년 이상 주소 또는 주된 사무소를 해당 시·구에 두고 해당 시·구에 소재한 1천㎡ 이상의 논·농업 또는 밭·농업에 이용하는 농지(신청인의 주소지 동을 기준으로 다른 시·군·구 중 연접한 읍·면·동 내의 농지 포함)를 직전 1년 이상 경작한 자

적용예시



- ② 같은 시(세종자치시 및 제주도 행정시를 포함)·군·구(연접 시·군·구 포함)에 소재하는 1만㎡ 이상의 농지를 경작하는 농업인 또는 같은 시·군·구(연접 시·군·구 포함)에 소재하는 5만㎡ 이상의 농지를 경작하는 농업법인
- ③ ‘지급대상 농업인등’의 자격요건에 충족하고 연간 농산물 판매금액이 900만원 이상인 농업인 또는 4,500백만원 이상인 농업법인

③ 지급대상 품목

☑ 논(畓)에서 재배하는 식량 및 사료작물(휴경면적 및 시설면적 제외)로서 6월 말 이전까지 수확이 가능하여 이모작 재배를 할 수 있는 품목

* 이모작(二毛作): 같은 농지에서 두 종류의 농작물을 1년 중 서로 다른 시기에 재배하는 토지의 이용법을 말함

* 시설: 온실 비가림시설 등과 같이 유리 비닐 등으로 파복하고 사람이 들어가 농작업이 가능토록 설치한 것

① 겉보리, 쌀보리, 맥주보리, 밀, 호밀, 귀리, 감자 등

* 감자와 같이 한시적으로 할죽이나 철선 등으로 반원형 터널상의 골조를 만들어 작물을 재배하여 해당기간(6월) 내 수확이 가능한 품목은 지급 가능(터널재배)

② 청보리, 이탈리아 라이그라스 등 농업경영체 등록에서 사용하는 농축수산물 표준코드의 중분류를 기준으로 사료작물 및 목초류에 해당하는 품목

△ 사료작물 : 귀리, 사료용 유채, 호밀, 이탈리아라이그라스 등

△ 목초류 : 알팔파, 화이트클로버, 레드클로버, Birds foot trefoil(버즈풋트레포일), 오차드그라스, Tall fescue(톨페스큐), 티모시, Perennial rye grass(페레니얼라이그라스), 켄터키블루그라스, Redtop(레드톱), Reed canarygrass(리이드 케너리그라스), Meadow fescue(메도우페스큐), Bromgrass(브롬그라스) 등

이모작 (파종 ~ 수확) 지급 가능 예시

10	11	12	1	2	3	4	5	6	7	8	9
										충족	
(파종 11月 ~ 수확 6.30日 이전)											
						(파종 3月 ~ 6월말 이후 수확)					
						미충족					

* 전년도 10월부터 ~ 6월까지 파종부터 수확까지 완료해야 지급 가능

논활용(이모작)직불금 대상품목 재배양식별 지급대상 면적산정

① 한 필지 내에 2개 이상의 대상품목을 섞어 지을 경우

- 대상품목 재배면적의 합을 측정하여 지급대상 면적으로 산정

② 한 필지 내에 대상품목과 비대상품목을 섞어지을 경우(혼작, 간작, 색동재배, 디자인재배 등)

- 대상품목 재배면적만을 지급대상 면적으로 산정하며, 비대상품목 재배면적은 제외

* (예시) 필지면적 1,000m², 색동재배 시 대상품목 재배비율이 80%일 경우 지급대상면적은 1,000m²×80% = 800m²

* 다만, 필지 내 전체 재배면적 대비 대상품목 재배면적 비율이 50% 이상일 경우에만 지급대상으로 인정하며, 50% 미만일 경우 전체 필지 면적을 지급대상에서 제외

③ 한 필지 내에 일부는 대상품목을 식재하고, 일부는 휴경할 경우

- 대상품목 재배면적만을 지급대상 면적으로 산정하며, 휴경면적은 제외

4 지급단가 등

☑ **지급대상 농지 및 농업인의 자격요건**이 충족한 경우 1ha당 50만원 지급

- 지급단가 : 1m² 당 50원
- 지급금액 : 지급단가(원/m²) × 지급대상 농지면적(m²)
 - * 필지별로 지급금액을 계산하여 10원미만 절사 후 개인별로 합산
- 지원형태(재원) : 국고 보조 100%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기금)
-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 농업인 : 30ha (300,000m²)
 - △ 농업법인 : 50ha (500,000m²)
 - △ 공동농업경영체(들녘경영체) 농업법인 : 400ha (4,000,000m²)
 - * 공동농업경영체 농업법인의 회원인 농업인의 지급상한 면적에 관하여는 농업인 30ha를 적용
 - * 지급상한을 초과하여 신청하는 경우 신청 농지를 모두 접수하되, 직불금은 지급상한 면적까지만 지급

5 논활용(논이모작) 부정수급 등

☑ **논활용직불 등록자가 행정기관을 기망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또는 직불금을 수령한 경우(법 제43조) 엄격하게 처분

☑ **부정수급, 행정착오** 등으로 인하여 지급한 직불금을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

- ① (부정수급)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행정기관을 기망한 경우
 ❶ 논활용직불금 전액 환수, ❷ 3년 등록제한, ❸ 부정수급자 정보공개,
 ❹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 등의 조치

- * 「농업·농촌 공익직불법」 제43조(벌칙), 제44조(양벌규정), 동법 시행령 제50조(논활용직접지불금의 지급제한 및 환수 등), 동법 시행규칙 제39조(논활용직접지불금의 지급제한 등)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의3(강제징수), 제36조의2(명단 등의 공표), 제40조(벌칙)

참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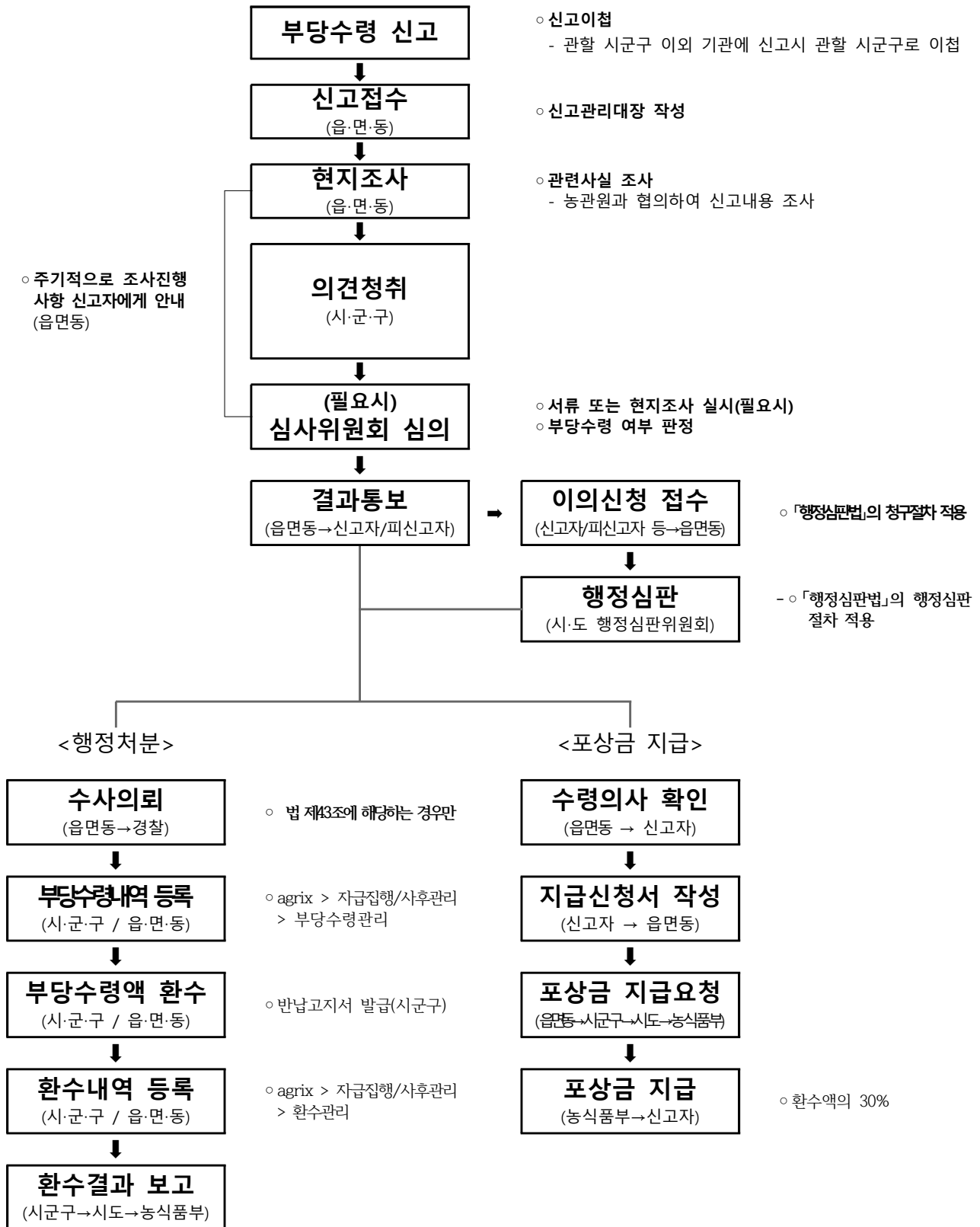
-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 구성요건상 행위자가 불법영득의 의사를 가질 것으로 규정(대법원 2002.12.24. 선고 2002도5085판결등)
 - 구성요건으로는 행위자가 허위의 서류를 작성·제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행정기관을 기망하여 행정기관이 이로 인하여 착오를 유발하는 행위
 - 불법영득은 기망행위로 인하여 직불금 수령 등의 목적을 달성한 경우
- ▶ 기망행위에 의하여 국가적 또는 공공적 법익을 침해한 경우 형법상 사기죄의 보호법인인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과 동일하게 평가(대법원 2008.11.27. 선고 2008도7303판결)
- ▶ (착오 등) 행위자의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 벌하지 아니함(「형법」 제16조)
 - 착오 등(착오 또는 경미한 과실)에 대해서는 행정기관 또는 행위자 모두 발생할 수 있어, 「농업·농촌공익직불법」에서는 이를 조사하고 필요한 경우 변경할 수 있도록 규정
 - 착오 등으로 인하여 사실과 다르게 등록하거나 잘못 수령한 경우 '지급한 금액'은 수령한 금액 전부가 아닌 착오등으로 지급한 금액을 환수(대법원 2019.2.21., 선고 2014두12697)

참고 4

논활용직접지불금 지급제한의 세부기준 및 지급대상자의 등록 제한기간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지급제한 기준	등록 제한기간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대상자로 등록하거나 논활용직접 지불금을 지급받은 경우	영 제50조제1항제1호	논활용직접지불금 전부 미지급	3년
1) 논활용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로 등록한 경우		논활용직접지불금 전부 미지급	
2) 논활용직접지불금을 지급받은 경우		논활용직접지불금 전부 미지급	
나. 영 제47조에 따른 지급요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갖추지 않은 경우	영 제50조제1항제2호	논활용직접지불금 전부 미지급	-
1) 논활용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등록요건을 갖추지 않은 경우		논활용직접지불금 전부 미지급	
2) 지급대상 농지를 법 제12조제1호에 따라 관리하지 않은 경우		해당 농지분에 한정하여 논활용직접지불금 전부 미지급	
가) 영 제12조제1항제1호·제2호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도록 농지의 형상 및 기능을 유지하지 않은 경우		해당 농지분에 한정하여 논활용직접지불금 50 퍼센트 미지급	
나) 영 제12조제1항제3호·제4호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도록 농지의 형상 및 기능을 유지하지 않은 경우		해당 농지분에 한정하여 논활용직접지불금 전부 미지급	
3) 영 제47조제2호에 따른 요건을 갖추지 않은 경우		해당 농지분에 한정하여 논활용직접지불금 전부 미지급	

참고 5 부정수급 처리 절차



※ 부당수령자 중 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와 같이 부당수령금 회수가 어려운 경우에는 실경작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의결한 후 관련서류를 확보하고 전산시스템에 입력하여 정리할 것

참고 6 부정수급 신고센터(1644-8778) 운영

☑ **대국민 감시 및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을 확대하여 공익직불금(농식품 보조금) 부정수급 경각심 강화 및 자정 능력 향상**

□ **(신고센터 운영)** 농관원은 부정수급 신고센터 운영 및 신고내용에 대하여 농관원·지자체 합동으로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위반자에 대하여 조사

* 농관원 본원 중앙조사단, 지원별 조사전담반을 편성·운영

□ **(신고접수 및 처리절차)** 부정수급 신고가 접수되면 신속하고 공정하게 조사하여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라 엄격하게 처분

① 해당 시·군·구 및 농관원의 “부당수령 신고센터” 방문을 통한 서면 신고 또는 농관원의 부정수급 신고 콜센터(1644-8778) 등을 통한 구두 신고

* 신고서(별지 제20호 서식) 및 관련 입증서류를 첨부

② 신고를 접수한 해당 시·군·구, 농관원은 신고내용을 관리대장(별지 제21호 서식)에 등록하고 구두신고의 경우, 콜센터에서 해당 시·군·구로 즉시 이송

* 구두신고 시 최소 확인사항: 부당수령자 성명, 농지주소, 위반사항, 신고인 성명, 신고인 연락처

③ 시·군·구는 관할 농관원 사무소와 협의하여 신고한 내용에 대해 현지 조사

④ 조사결과 부정수급자로 판단될 경우 「행정절차법」에 따라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조사 결과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직불금 회수 및 등록제한 등 조치

⑤ 조사 결과를 신고인에게 통보하고 포상금 지급대상자 확인 후 안내

* 신고자에게 조사결과를 통지할 때에는 신고한 방법과 같은 방법(전화신고의 경우 전화 등)으로 통지하되, 신고자가 별도의 통지 방법을 요청하는 경우 그 의견을 수렴하여 처리

⑥ 신고에 의해 부정수급이 확인되어 농관원·지자체에서 부정수급액을 환수한 경우 신고자에게 통지하고 신고포상금 지급요청서(별지 제23호 서식)를 제출받아 농식품부에 통지

포상금 지급제외

- ① 타 법령 등에 따라 동일 사항에 대하여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
- ② 신고한 내용이 언론매체 등에 의하여 사전에 공개된 내용이거나, 관계 행정기관에서 사전 인지하여 이미 조사 또는 수사 중인 경우
- ③ 위반행위가 신고내용과 무관한 경우
- ④ 익명(정확한 인적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이나 가명 등으로 신고하거나 지급신청을 한 경우
- ⑤ 공익직불금 지급대상자 등록 및 관리 등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 ⑥ 신고대상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

[업무 흐름]	[시기]	[주요 내용]
① 논활용직불 신청·접수 전	1~2월	▶ 사업시행지침 시달 ▶ 신청·접수 전 사전준비 ▶ 사업 교육·홍보 및 신청·접수계획 수립·실시 * 각 지자체별 자체 교육·홍보 계획 수립 및 실시 * TV방송, 지역언론, 새해영농실용화 교육, 이통장 월례회, 현수막, 홈페이지 배너 등을 통한 홍보 실시 ▶ 농업인 대상 논활용직불 자격요건, 신청·접수 등 공고
② 등록신청 접수 등	2~3월	▶ 등록·신청(농업인 등) 및 접수(읍면동) * 농업인 논활용직불 신청서를 농지소재지 기준 읍면동 제출 * 임차 농업인은 농지의 신규임차, 임대차 종료 등 적법한 권원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안내 ▶ 신청서 전산입력(읍면동) * 전산입력 및 읍면동 서류이송 등
③ 신청자 정보공개	3~9월	▶ 성명, 지번, 면적 등 신청정보 공개 * 농식품부(agrix.go.kr) 및 시군구 홈페이지
④ 지자체 신청사항 조사 및 등록증 발급	3월	▶ 관외거주자 등 부정수급 우려대상 경작사실 확인 등 서류 및 현지조사 ▶ 논활용직불 신청정보에 대한 논활용직접지불금위원회 심사(읍면동) * 지급대상농지 적격여부, 지급대상자 적격여부, 첨부서류 구비여부 등 ▶ 지급대상자 선정 및 등록증 발급(지자체) * 지급대상 제외자에게는 해당 사유 통보
⑤ 등록사항 변경 및 이행점검	3~5월	▶ 등록사항 변경 및 등록증 재발급 * 등록내용에 잘못이 있는 경우 ▶ 농지의 기능 및 형상 유지여부 이행점검(농관원) * 이행점검 결과 이의신청 처리 등
⑥ 지급요건 검증	4~5월 (9월)	▶ 지급요건 검증(대량검증) * 등록자 및 등록농지 전수검증 * 유관기관DB 및 Agrix시스템 등 활용 ▶ 농업 외 소득검증은 9월 중 국세청 소득자료 활용
⑦ 직불금 지급	10월~	▶ 논활용직불금 지급(시군구 → 농업인) * 지급대상자 계좌로 입금 ▶ 논활용직불금 수령자 정보공개(Agrix홈페이지)
⑧ 사후관리	연중	▶ 부당수령신고센터 운영, 부정수급 조사·단속 * 직불금 콜센터(1644-8778) 및 시·군 신고센터 ▶ 지자체 교차점검 및 농식품부·지자체 등 합동점검(상·하반기)

< 꼭 알아야 될 사항 >

▶ 관할지

- ☞ **(관할지)** 지급대상 농지가 가장 넓은 농지소재지의 1개 읍·면·동(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
 - * 신청·접수 후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지정(타 읍면동에서 접수받은 경우 관련 서류 이관). 다만, 읍·면·동 간의 협의가 완료된 경우 관할지 변경 가능
- ☞ **(주요업무)** 논활용직불 신청·접수, 자격검증 주관, 등록증 교부, 등록정보 변경접수 및 수정, 주요 행정처리(의견청취, 준수사항 감액, 부정수급, 환수 명령 등), 수령자 정보공개 등

▶ 관외경작자

- ☞ **(대상)** 논활용직불 신청자의 주소지가 같은 시·군·구 또는 그와 잇닿아 있는 시·군·구에 없는 경우 또는 주소지와 농지소재지의 거리가 30km 이상인 경우 (참고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
- ☞ **(관리방향)** 지자체 신청내용에 대한 현장조사, 농지소재지 기준 '경작사실확인서' 제출 필수, 농약·비료 등 구매내역(시스템 검증), 실경작 또는 위탁경영 여부 등 확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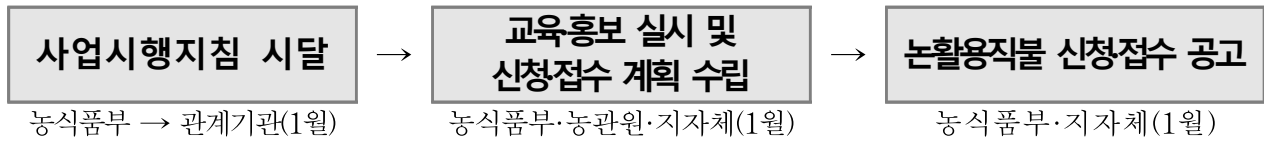
▶ 종사 & 자경

- ☞ **(종사)** 자기의 비용과 책임으로 농작업을 직접 수행(농작업의 일부만 위탁하는 경우, 휴경하는 경우 포함)하는 것(법 제2조제7호)
- ☞ **(자경)** 농업인이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
 - * 농업법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

▶ 위탁경영

- ☞ **(범위)** 농지소유자는 원칙적으로 위탁경영을 할 수 없음. 다만 농업인이 자기 노동력이 부족하여 농작업 일부를 위탁할 때에는 가능(「농지법」 제9조)
 - * 제외조건 「병역법」에 따라 징집 또는 소집된 경우, 3개월 이상 해외 여행 중인 경우, 농업법인이 청산 중인 경우, 질병·취학 및 선거에 따른 공직 취임, 농지이용증진사업 시행계획에 따른 위탁경영, 부상으로 3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 교도소·구치소·보호감호시설에 수용중인 경우,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경우
- ☞ **(일부위탁 인정범위)** 다음에 해당하는 재배작물의 종류별 주요 농작업의 1/3 이상을 자기 또는 세대원의 노동력에 의하고 1년 중 30일 이상 직접 종사하는 경우
 - * (벼) 이식 또는 파종, 재배관리 및 수확, (과수) 가지치기 또는 열매숙기, 재배관리 및 수확, (벼, 과수 외) 파종 또는 육묘, 이식, 재배관리 및 수확

① 논활용직불 신청·접수 전



① 사업시행지침 시달(농식품부)

△ 농식품부는 사업시행지침을 수립하여 시·도(시·군·구) 등 관련기관에 시달

② 신청·접수 전 사전준비(농관원, 지자체)

△ 농관원은 先 **경영체등록정보 변경**, 後 **공익직불금 신청체계 정착**을 위한 농업경영체 변경등록 접수계획 수립

△ 농관원·지자체는 현장조사원 및 전산보조원 채용 등 사전준비 철저

* 사무소, 읍·면·동 여건(신청·접수 건수, 소농직불 대상 등)을 고려하여 인력 배분

③ 교육계획 수립 및 실시(농식품부, 농관원, 지자체)

△ 농식품부는 지자체 업무담당자를 대상으로 시·도별 순회교육(영상회의) 실시

△ 시·도(광역시)는 관할 시·군·구(기초) 업무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자체 실무교육 실시

시·도(시·군·구)는 자체 실무교육 실시 후 그 결과를 2월까지 농식품부로 제출

④ 홍보계획 수립 및 실시(농식품부, 농관원, 지자체)

△ 지자체 및 농관원은 관련기관(농업기술센터, 농어촌공사, 농협 등)과 협조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자체 홍보계획을 수립하여 실시

* 동장·이장단 원레회·교육, 새해농업인 실용교육, 홍보지·지방지·현수막·홈페이지 배너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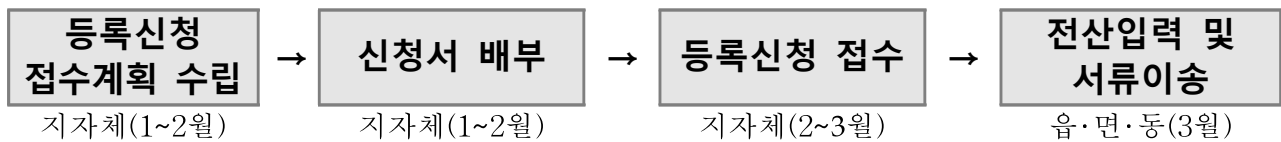
⑤ 등록신청 공고(농식품부, 지자체)

△ 농식품부 및 지자체 등 관계기관은 접수일 7일 전까지 관보·공보·게시판·일간신문, 인터넷 등을 통해 등록신청 공고

* 지급대상 농지, 지급대상자, 등록신청 기간 및 방법 등 등록신청에 필요한 사항

* 향후 홍보 미흡에 따른 민원 발생의 소지가 있으므로 반드시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공고 실시

② 등록신청 접수 등



① 등록신청 접수계획 수립(지자체)

△ 읍·면·동 직불담당자는 코로나-19 등을 고려하여 등록신청 계획을 수립

*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맞게 신청접수 **안전관리 대책**을 수립하고, 필요한 경우 접수장소 마련, 소독 및 환기 등 자체방역 시행, 비접촉식 온도측정, 농업인 마스크 착용 및 손소독제 사용 등 행동 준수 안내

△ 시·군·구 직불담당자는 읍·면·동 직불담당자 대상 논활용직불 주요 자격요건 및 전산 보조원 전산입력 사항 등을 숙지하고 **원활하게 접수할 수 있도록 조치**

② 신청서 배부(지자체)

△ 읍·면·동 직불담당자는 지역여건 등을 감안하여 대상자 각각 논활용직불 등록신청서 인쇄 및 배부(1~2월)

△ 신청서는 전년도 지급 수령자를 기준으로 배부하며, 신청서를 배부받지 아니한 농업인은 농지 소재지 읍·면·동에 방문·접수

③ 사업신청(농업인 등)

△ 논활용(논이모작) 직불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농업인 등은 신청기간 내에 신청서류를 갖추어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서 등록신청

논활용직불 등록·신청은 농업인 본인이 신청하는 것이 기본원칙

* 다만, 고령 농업인 등을 감안하여 이장·동장 등의 협조는 가능하나, 신청 누락 등 향후 발생하는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음

△ (등록신청 기간) 2. 1. ~ 3. 12.

* 등록신청 기간은 코로나-19 등을 고려하여 변경될 수 있음

△ (등록신청 장소) 농지 소재지 읍·면·동사무소

* 신청 농지가 여러 읍면동(또는 시·군·구)에 분산되어 있는 경우, 농지 면적이 가장 넓은 읍면동에서 신청이 원칙 다만 민원인 요구 및 현장 여건 등을 감안하여 면적과 관계없이 담당공무원의 재량으로 신청접수 가능

④ 신청시 제출서류(농업인 등)

△ 농업경영체 등록(변경등록) 신청서 및 관련 첨부서류 □ (참고 6)

* 그 밖의 등록신청 담당 공무원이 지급대상자임을 조사·확인을 위한 증빙서류

구 분	기존 수급자	신규 신청자	비 고
I. 논활용직불 신청서			
1-1. 논활용직불 신청서	☒	☒	
II. 지급대상 농지 증명			
2-1. 종전의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농지		☒	
2-2. '98년 1월 1일 이후 조성된 농지로서 농지의 형상 및 기능을 유지하고 있는 농지		☒	
2-3. 지급대상 제외 농지이나 예외규정에 적용되는 농지 * 하천농지, 전용취소, 주·상·공지역, 산업단지, 농공단지, 택지개발지구 등	☒	☒	
2-4. 자기 소유가 아닌 농지 * 국·공유지, 불가피하게 사실상의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농지, 종중농지 등 포함	☒	☒	
III. 지급대상자 증명			
3-1. 농촌 외의 지역에 주소 또는 사무소를 둔 자	☒	☒	
3-2. 농촌에 주소 또는 주된 사무소 둔 자		☒	
3-3. 불가피한 경우로 인한 승계자	☒	☒	

④ 신청서류 확인(지자체)

△ 신청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검토 후 접수

△ 첨부서류가 미비한 경우 우선 접수처리 하되, 추후 일정 기간을 두고 필요한 구비서류를 추가 제출토록 조치(기간 내 미제출시 지급대상 제외)

* 미비한 신청서류는 접수받은 읍·면·동에서 보완 완료 후 관할 읍·면·동으로 이송

등록신청 시 유의사항

① 직불금 수령자 성명 및 계좌번호 확인 철저

- 직불금 신청자는 신청서 상 "수령자"와 동일해야하며, 신청자 명의 계좌로만 입금 가능

④(수령자 성명)	(연락처)	(은행명)
직불금 신청자 성명 기재	(계좌번호)	직불금 신청자 명의 계좌만 가능

② 임대차계약기간 확인 및 입력 철저

- 임대계약 기간 종료 시 증빙서류 제출 대상이나, 전년도와 변동이 없을 시 면제대상으로 오인 하기 쉬우므로 임대계약기간 종료시점 확인 필수

③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에 따른 지급대상 제외 가능여부 안내 철저

- 공동경작 농업인 중 1인이 대표로 신청 시,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 자격 요건을 필히 안내하여 민원사례 예방

참고 7 신청 시 제출서류 (행정정보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제출생략 가능)

구 분	제출서류
0. 등록신청서	① 논활용직불 등록신청서
1-1. 지급대상 농지임을 증명하는 서류 (① ~ ③ 중 1개 이상)	① 종전의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제5조제1항에 해당하는 농지로서 쌀소득보전고정직불금, 밭고정직불금 지급대상 농지로서 농업에 이용된 농지임을 증명하는 서류 * (시스템 확인) Agrix시스템 - 사업참조정보 - 농지사업이력조회 * (서류 확인) 지급대상 농지 확인서(별지 제3호) ② 종전의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제5조제2항에 해당하는 농지로서 ‘97년 이전 1년 이상 논농업에 이용되었으나, ‘98년~‘00년 동안 불가피하게 논농업이 중단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 (서류 확인) 가경작 계약서, 간척지 사용료 납부자료, 경지정리 편입확인서, 재해보상 및 복구비 지원 확인서 등 농어촌공사 또는 지자체에서 확인한 서류 ③ 1998년 1월 1일 이후 조성된 농지로서 법 제12조제1호에 따라 농지의 형상 및 기능을 유지하고 있는 농지 * (서류 확인) 지급대상 농지 확인서(별지 제3호)
1-2. 적법한 권원없이 점유 또는 사용한 농지임을 증명하는 서류 (자경이 아닌 임차인 경우)	① 자기 소유가 아닌 농지를 적법한 권원없이 점유 또는 사용한 농지가 아님을 증명하는 서류 * (시스템 확인) Agrix시스템 농업경영체등록정보 임대차 기간 * (서류 확인) 임대차계약서, 국·공유재산 대부계약서(유,무상) 공증된 중증회의록 등
1-3. 지급대상 제외 농지이나 예외규정에 적용됨을 증명하는 서류	① 「하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하천구역에 있는 농지 * (서류 확인) 직전 연도까지 보상받지 않은 토지분배에 대해 기초단체장이 1년 이상 농업에 이용할 수 있다고 증명하는 서류 ② 「농지법」에 따른 농지전용 허가를 받거나 농지전용 신고를 한 농지와 농지전용 협의를 거친 농지 * (서류 확인) 관련 기관 등에서 발급한 제외 대상농지가 아님을 증명하는 서류 ③ 지급대상 제외 농지이나 예외규정에 적용됨을 증명하는 서류 (주거, 상업, 공업지역, 산업단지, 농공단지, 택지개발지구 등) * (서류 확인) 관련 기관 등에서 발급한 보상금을 받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2-1 지급대상 농업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① ~ ③ 중 1개 이상)	① 논활용작물 재배 등에 이용하는 농지의 면적이 1천㎡ 이상을 경작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 (시스템 확인) Agrix시스템 농업경영체등록농지 중 논활용 재배농지의 합계 면적 ② 농촌에 주소 또는 주된 사무소를 둔 경우 * (시스템 확인) Agrix시스템 G4C 검증 * (서류확인)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등 ③ 농촌 외의 지역에 주소 또는 주된 사무소를 둔 경우 * 2-2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 증명서류 참고
2-2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 증명(도시거주) (① ~ ③ 중 1개 이상)	① 같은 사군구(연접 사군구 포함)에 소재한 농지 1만㎡이상을 경작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농업법인은 5만㎡ 이상) * (시스템 확인) Agrix시스템 농업경영체등록정보 * (서류확인) 신청자 명의의 토지대장, 임대차계약서 등 ② 전년도 연간 농산물 판매금액이 9백만원 이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농업법인은 4천5백만원) * (서류확인) APC 전산출력물, 대금입금 영수증, APC 직인이 찍힌 판매 증명서, 도매시장 및 농산물 구입처에서 발행한 세금계산서, 전자상거래 입금통장 거래내역 사본 및 내역 서류 등 ③ 등록 직전 1년 이상 주소를 둔 사·구에 소재한 농지 1천㎡이상을 등록 직전 1년 이상 농업에 이용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주소지 증명) 주민등록등본 등 ㉡ (경작면적 증명) Agrix시스템 농업경영체등록정보 ㉢ (경작기간 증명) 신청자 명의의 해당 기간 중 영농자재 구입 또는 농산물 판매 영수증, 계약재배 영수증, 1년 이상 경작사실 확인서 등
2-3 승계대상자 증명 (①, ②, ③ 모두)	① 등록자가 사망, 중환, 등 불가피한 사유로 농업에 종사하지 못함을 증명하는 서류 * (서류 확인) 사망진단서, 뇌사 판정서, 실종확인서, 수감확인서, 진단서 등 ② 직접(지급) 연도 논활용직불 등록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임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 (서류 확인) 가족관계증명서 ③ 승계 사유 발생 직전 1년 이상 등록자와 주소를 같이 한 사실을 입증 할 수 있는 서류 * (서류 확인) 주민등록등본 ④ 지급대상농지가 임차인 경우 해당농지 무단점유 여부 * 1-2 적법한 권원없이 점유 또는 사용한 농지가 아님을 증명하는 서류 참고

⑤ QR코드 스캔(지자체)

△ 접수 즉시 QR코드를 스캔하여 Agrix 접수정보에 입력

* 직불금을 신규로 신청하여 신청서에 QR코드가 없는 경우에도 Agrix 접수정보에 입력

* QR코드 스캔은 전산입력 누락 방지장치이고, QR코드 스캔정보를 이용해 등록신청서 접수관리대장을 전산으로 관리하게 되므로 반드시 실시

⑥ 접수증 발급(지자체)

△ 신청인이 등록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갖추어 신청한 때는 접수증(별지 제4호) 발급

⑦ 전산입력(지자체)

△ 읍·면·동 직불담당자는 논활용직불 사전 등록정보를 바탕으로 신청 누락, 행정과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서류접수, 이관, 전산입력 등 관련 업무 철저

△ (입력기간) 2. 1. ~ 3. 12.

△ (입력내용) 신청서를 접수한 기관에서 등록신청서 정보 입력

△ 신청 농지가 2개 이상 읍·면·동에 있는 경우 신청서를 접수한 읍·면·동에서 전체 신청 내용을 전산입력하고,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지급 관할 타 읍·면·동으로 이송

* 미이송에 따른 신청누락 책임은 최초 등록·신청을 접수한 읍·면·동에 있음

△ 관할 읍·면·동은 타 읍·면·동에서 이송된 신청서의 전산입력 정보 누락·적정 여부 및 첨부서류 구비 여부 등을 최종 확인

신청정보 전산입력

① 타 읍·면·동에서 접수한 경우

- 접수한 읍·면·동에서 타 읍·면·동 정보까지 모두 입력 후 이송

② 신청자가 신규 경영체 등록자인 경우

- 농관원에서 신규 경영체 등록 후 읍·면·동에서 직불정보 입력

* 농관원에서는 신청·접수 기간 내 신속히 신규 경영체 등록정보 입력

③ 기존 경영체의 정보 수정이 필요한 경우

- 농관원에서 경영체 등록정보 수정 입력 후 직불정보 입력

⑧ 서류의 이송·전달(지자체)

△ (이송기간) 10일 이내

△ (이송방법) 우편, 방문, 팩스, 메일 등 업무여건에 따라 선택

* 기관간 서류 이송 즉시 상호 "인수인계서(별지 제6호)" 작성 교부

③ 신청자 정보공개 등

① 신청자 정보공개

△ (공개기간) 3월 ~ 9월

△ (공개방법)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go.kr) 공개

△ (공개내용) 신청자 성명(법인명), 신청 농지지번, 신청면적 등

△ (열람방법)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실명과 열람하고자 하는 목적 입력 후 열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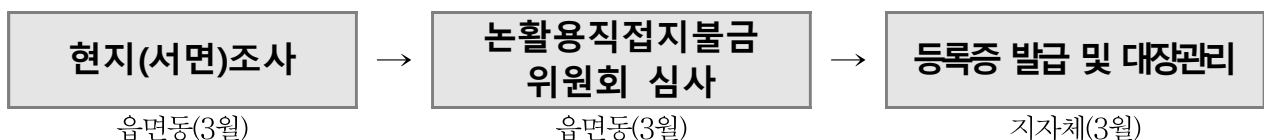
② 정보공개 이의신청

△ 공개된 내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 시·군·구에 서면(별지 제9호)으로 신청

유의사항

- ① 직불금 신청자·수령자의 정보는 정해진 방법에 따라 공개되고 열람되므로, 공개된 정보라도 정해진 방법 외에는 제공불가
- ② 정보공개 및 이의신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공익직접지불금 신청자·수령자의 정보 열람방법과 열람신청자의 개인정보 제공방법 및 이의신청 방법」(고시) 참고

④ 지자체 신청사항 조사 및 등록증 발급 등



① 현지(서면)조사

△ 읍·면·동 담당자는 농관원(명예감시원), 이(통)장 등의 협조를 받아 신청인이 실제 농업에 종사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관외경작자, 신규대상자 등을 중심으로 신청한 농지 경작여부 등을 서면조사와 현지조사 병행 실시

△ (조사 및 심사기간) 신청서 접수 후 등록증 발급 전 까지

△ 다른 읍·면·동의 농지가 신청되었을 경우 농지면적 및 거리등을 고려하여 농지소재지 읍·면·동에 현지조사를 의뢰

△ 현지조사를 의뢰받은 읍·면·동에서는 등록신청서 등을 전산, FAX 등으로 받아 조사에 활용

② 논활용직접지불금 위원회 → (참고 7)

△ 논활용직불 신청자에 대한 농업종사 등에 대하여 외부전문가 등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각 읍·면·동에서는 등록관리위원회를 개최

* 심사는 대면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코로나-19 등의 여건을 고려하여 서면으로 가능

△ 신청자의 신청서 및 첨부서류에 대한 현지조사 및 논활용직불금 위원회 심사 등이 완료되면, 읍·면·동장은 Agrix시스템에서 등록신청 내용 등을 최종 점검한 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

③ 지급대상자 등록증 발급

△ 신청인이 논활용직불 자격요건이 충족한 경우 논활용직불 등록증을 발급하고, 자격요건이 미충족한 경우 문서로 등록거부 통보(별지 제7호, 제8호)

△ (발급권자) 시장·군수·구청장(읍·면·동장)

△ (발급기간) 3월 내

* 시·군·구에서는 읍·면·동을 통해 등록증 교부를 요청할 수 있으며, 등록증은 반드시 농업인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조치

△ 등록증 번호는 시·군·구 단위로 일련번호를 부여하되, 시·군·구에서는 기 부여된 등록증 번호는 변경 불가

△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자는 해당신청인에게 제외사실을 통보

* 지급대상 제외 통보에 대한 이의신청이 있을 경우 등록신청에 대한 이의신청 처리에 준하여 처리

등록증 및 지급대상자 제외 통보서는 이후 이의신청 등의 근거서류가 되므로 신청자에게 반드시 교부

참고 8 **논활용직접지불금 심사관리위원회**

※ 논활용직불 등록대상자가 10인 미만인 경우에는 읍·면·동장이 직접 심의 또는 인근 읍·면·동과 합동으로 심의

☐ 위원장 : 읍·면·동장

☐ 위원 : 심사관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다음에 해당하는 자로 구성(임기 2년, 재임 가능). 다만, **등록대상자가 소수,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시·군·구 주관 조정 심의 가능**

- 농지등 소재지 읍·면·동 관할 이·통의 마을 대표
- 농업회의소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농업회의소에서 추천하는 회원
- 해당 읍·면·동을 관할 구역으로 하거나 사업 구역으로 하는 농업협동조합 등 생산자 단체의 장 또는 농업인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소속 임직원이나 회원
- 해당 읍·면·동을 관할 구역으로 하거나 사업 구역으로 하는 농업기술센터 등 농업 관련 기관에 종사하는 사람
- 해당 읍·면·동을 관할 구역으로 하거나 사업 구역으로 하는 소비자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소속 직원이나 회원
- 해당 시·군을 관할 구역으로 하는 농관원 지원·사무소 담당자

☐ 제척·기피·회피 : 심의의 제척·기피·회피는 「행정절차법」 제29조를 준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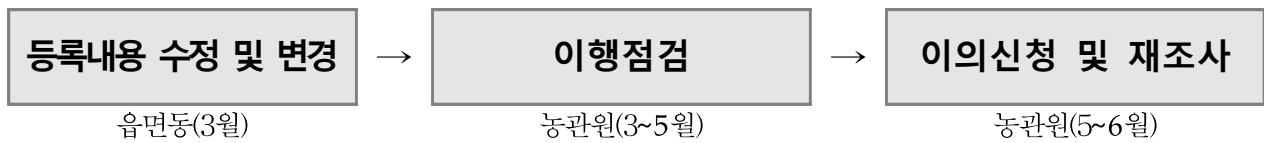
☐ 임무 : 실제 농업에 종사여부 확인을 위한 현지조사 등 필요한 조사

- 조사대상에 관외경작자, 신규신청자, 전년도 부적격 판정 신청자는 필히 포함
- 집중 심사 내용
 - ① 관외경작자의 밭농업 종사여부 확인 : 판매증빙서, 자재구입영수증, 영농기록 등
 - ② 사망, 고령, 중환 등으로 승계받는 자에 대한 심사
 - ③ 신규 신청자 및 신규로 편입되는 농지에 대한 심사
 - ④ 동일 필지에 중복으로 신청한 사람들의 실제 경작자 확인
 - ⑤ 부당수령자가 소유한 농지가 포함되었는지 여부 확인
 - ⑥ 자기 소유 농지가 아닌 자의 무단점유 여부
 - ⑦ 농지처분 명령 대상자(해당필지) 등 지급대상 제외자 여부 확인
 - ⑧ 그 밖에 위원장이 심사 의뢰하는 사항

☐ 개의 :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

☐ 의결 :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5 등록사항 변경 및 이행점검



① 등록내용 수정

- △ (수정사유) 등록증을 받은 자가 등록내용에 잘못이 있는 경우
- △ (신청기간) 등록증을 발급받은 날부터 14일 이내
- △ (신청기관) 발급받은 읍·면·동장을 거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
- △ (신청서류) 발급받은 등록증 및 관련 증빙서류 첨부
- △ (결과조치) 신청내용에 대한 확인을 거쳐 결격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등록대장에 변경등록을 하고, 읍·면·동장을 거쳐 신청인에게 등록증을 재발급

② 등록사항 변경 신청 및 신고

- △ (변경등록 신청 및 신고서 제출) 읍·면·동장을 거쳐 시장·군수·구청장
- △ (변경기간) 5. 31.까지
- △ 지급대상 농지 면적, 재배작물이 변동된 지급대상자
- △ 등록자에게 지급대상 농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수(讓受), 임차 또는 사용차(使用借)하는 농업인등(변경내용을 신고한 후 지급대상자로 인정되면 변경등록)
- △ 신청자가 변경등록 기간 내에 사망(뇌사 포함)한 경우 승계자격요건을 갖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변경내용을 신고한 후 지급대상자로 인정되면 승계)

③ 변경등록증 발급

- △ 시·군·구는 변경등록신청(신고)서를 제출받으면 지급대상 농지 등 변경사항을 확인(지급대상자 여부 등을 확인)한 후 이상이 없는 경우에는 등록대장에 변경등록, 읍·면·동을 거쳐 신청(신고)인에게 등록증 발급
- △ 등록증을 받은 자가 등록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등록내용 수정’에 준하여 처리

유의사항

- ①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 등 자격요건이 미충족되었다 하여 변경등록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이에 따른 신청자 변경 불가
- ② 등록사항 변경신청 및 신고 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는 등록증이 발급된 자를 변경할 수 없음

④ 이행점검 실시(농관원)

△ (점검기간) 3월 ~ 5. 31.까지 (지자체 통보기간 포함)

△ (점검의뢰) 등록된 농지(농업인)에 대하여 농관원으로 일괄 의뢰

* 의뢰시기 이후 등록된 농지에 대해서는 읍·면·동에서 현장점검 실시

△ (점검대상) 논·밭·농지(이모작) 직불금 등록·신청 농지

* 등록된 농지(농업인) 중 경영체DB 및 팜맵 등을 활용하여 부정신청이 의심되는 대상 위주로 선정(신규신청자, 관외경작자, 전년도 부적격 신청자 필수 포함)

△ (점검비율) 전체 대상필지 대비 40% 이상 (현장점검 40%)

△ (점검내용) 농지의 형상 및 기능 유지 여부, 대상품목 재배 여부 등

△ (점검방법) 농관원은 세부점검계획을 수립·시행하고, 모바일 현장점검시스템, 팜맵, 드론 등을 활용하여 대상품목 재배 여부 등 중점 점검 실시

* 농관원은 이행점검 세부점검 계획을 수립하여 3.12.까지 농식품부로 제출

△ (결과통보) 농관원은 부적합 내역이 있는 농업인에게 서면(별지 제11호) 등으로 점검결과를 통보

△ (이의신청) 이행점검 결과에 이의가 있는 농업인은 결과통보를 받은 7일 이내 서면(별지 제12호)으로 관할 농관원으로 재조사 요청

* 이의신청을 받은 농관원 사무소는 즉시 재조사 후 그 결과를 농업인에게 통보

△ (결과보고) 농관원은 이행점검 결과를 농식품부로 보고

⑥ 지급요건 검증 등(지자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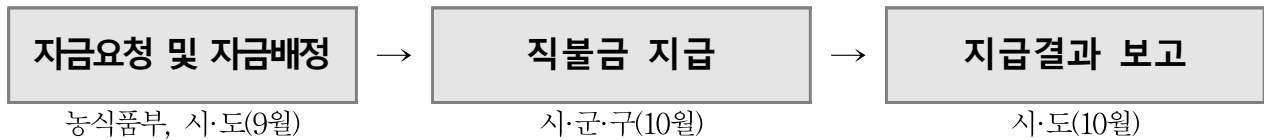
① (검증대상) 등록·신청자 및 등록농지 전수 검증

② (검증방법) 유관기관DB 및 Agrix시스템 등 활용

③ (검증내용) 농업 외 종합소득, 토지대장, 주민정보(G4C), 중복신청, 농지전용 등

④ (검증자료) 지자체 DB(공유지, 농지전용 등) 자료 제공요청 시 신속하게 회신하여 기간 내 지급요건 검증이 완료될 수 있도록 조치

7 직불금 지급 등



① 자금요청 및 교부결정(농식품부, 시·도)

- △ (자금요청) 시·도는 시·군·구별 지급대상자, 면적, 소요자금 등을 확정하여 서면으로 농식품부에 자금요청
- △ (교부결정) 농식품부는 시·도의 자금요청 및 시스템 통계를 토대로 시·도별 교부결정 통보
- △ (전산작업) 시·도는 자금이 교부될 수 있도록 e-호조 및 e-나라도움 시스템 맵핑
- △ (자금교부) 농식품부는 시·도에 자금교부, 시·도는 즉시 시·군·구에 전금

② 직불금 지급(지자체)

- △ 시·군·구(읍·면·동)는 시·도에서 자금을 교부받아 신속히 지급대상자 계좌에 입금
- △ 통장입금 시 지급대상자와 예금주를 필히 확인한 후 같은 사람일 경우 입금
- △ (지급시기) 10월 중

지자체에서는 논활용(이모작) 직불금 입금 시 “논이모작직불”을 명기하여 지급

③ 지급결과 보고(시·도)

- △ 시·도는 직불금 지급결과를 서면으로 농식품부에 보고(11월)

8 사후관리 단계

① 수령자 명단공개

- △ (공개기간) 직불금 지급 후 30일 이내 공개 후 1년간
- △ (공개장소) 농식품부 또는 시·군·구 인터넷 홈페이지 (agrix.go.kr)
- △ (공개내용) 성명(법인명), 농지지번, 신청면적, 수령금액
- △ (열람방법)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실명과 열람하고자 하는 목적 입력 후 열람
- △ (이의신청) 공개된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서면 (별지 제9호 서식)으로 신청

관 련 서 식

■ [별지 제1호 서식] : 논활용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등록신청서(농업인용)

⇒ 「농업·농촌 공익직불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 서식과 동일(생략)

■ [별지 제2호 서식] : 논활용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등록신청서(농업법인용)

⇒ 「농업·농촌 공익직불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과 동일(생략)

논활용(논이모작) 직불금 지급대상 농지 확인서

신청인	성명 (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농지 소재지			면적(m ²)	비고
읍·면·동	리·통	지번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따라 논활용직접지불금 지급대상농지로 등록을 신청하는 농지는 다음과 같이 이용된 농지(현재의 논)임을 확인합니다.

- '98.1.1.부터 '00.12.31.까지 논농업(벼, 연근, 미나리, 왕골 재배)에 이용된 농지로서 현재 논으로 활용될 수 있는 농지
- '12.1.1.부터 '14.12.31.까지 밭농업에 이용된 농지로서 현재 논으로 활용될 수 있는 농지
- '98.1.1. 이후 조성된 농지로서 현재 논으로 활용될 수 있는 농지의 형상 및 기능을 유지하고 있는 농지

확인자 구분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날짜	서명
농지소재지 이(통)장					
농지소재지 거주자					
농지소재지 거주자					
* 농지 소재지 이(통)장과 농지 소재지 거주자 2명의 확인을 받되, 이(통)장의 확인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농지 소재지 거주자 2명의 확인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농지소재지 거주자					
농지소재지 거주자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 이(통)장과 농지 소재지 거주자 2명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 농지소재지 거주자 확인은 신청자와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관계 외의 자로 한정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농활용(논이모작) 직불금 등록신청서 접수증

<접수번호 : >

□ 신청자 내역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20 년 월 일

신청자 : (인)

절 치 션

<접수번호 : >

농활용(논이모작) 직불금 등록신청서 접수증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 등록신청서에 기재된 대상농지 및 면적 등은 논활용(논이모작) 직불금 지급 최종
확정시까지 변경될 수 있음

20 년 일 일

음·면·동장(사무소장) (인)

직접지불금 등록신청서 접수 관리대장(공통)

※ 해당 관할 지역 지급대상자에 대해 직접 접수받은 내역과 타 지자체(읍·면·동)에서 이송받은 내역을 모두 기재하여 관리

접수 번호	접수 일자	신청자 내역			접수 내역 ²⁾		이송 여부 ³⁾ (O,X)	전산 입력 여부 (O,X)	비고 (접수자)
		주소	생년월일	경영주 성명 ¹⁾ 지역 신청자 성명(전체)	직접 접수	이송			

- 신청서의 경영주 이름을 기재하고, 점선 밑의 란에 관할 지역 내 신청자 전부 표기
예시) ① 경영주와 관할지역 내 직불 신청자가 같은 경우 : 경영주 성명 표기
② 관할지역 내 직불 신청자가 경영주를 포함하여 여러명인 경우 : 경영주를 포함한 신청자 모두 표기
③ 관할지역 내 직불 신청자가 경영주와 다를 경우 : 신청자 명 표기(복수일 경우 전부 표기)
- 직접 접수 받은 경우는 직접접수란에 '○', 타 지자체에서 이송받은 경우는 이송란에 표기
- 최초 이송받은 읍·면·동이 타 지급 관할 읍·면·동으로 이송하였는지 여부

등록번호 제
호

기본직접지불금(논활용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등록증

[기본: 소농직접지불금()・면적직접지불금(), 선택: 논활용직접지불금(O)] ※() 해당란에 "O"표시

등록 신청인	성 명 (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입금계좌	은행명		계좌번호	

농지등 소재지			농지등 소유자	기본직접지불금 (소농직접지불금・면적직접지불금)					선택직접지불금 (논활용)		
읍·면	리·동	지번 (임사지번)		합계	농촌진흥 지역 안(m ²) (논 + 밭)	농촌진흥지역 외의 지역(m ²)		농지등이용면적 (m ²)		재배 품목	신청 면적 (m ²)
						논	밭	작물재배	휴경		
합계											

위 등록신청인은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같은 법 시행령 제45조제4항 및 시행규칙 제37조제1항)에 따라 기본직접지불금[소농직접지불금()・면적직접지불금()], 논활용직접지불금(O) 지급대상자로 등록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
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직인**

*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기본직접지불금(논활용직접지불금) 지급대상 농지등의 면적 등 등록사항이 변동되면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농지 등 소재지 관할 읍·면·동장)에게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공고하는 날까지 변경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 기본직접지불금의 경우에는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면 등록된 모든 농지등의 기본직접지불금 전부를 지급하지 않고, 법 제19조제1항제5호부터 제9호까지에 해당하면 해당 농지등의 기본직접지불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 논활용직접지불금의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9조에 따라 등록된 모든 농지의 논활용직접지불금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또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하거나 수령한 경우 등에 대해서는 제20조에 따른 부당이득금·제재부가금·가산금을 부과받을 수 있고, 법 제43조제1호부터 4호까지에 따른 형사처벌의 부과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이 등록증은 기본직접지불금(논활용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등록내용에 대한 확인 외의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행정기관명

수신자
(경유)

제 목 **논활용(논이모작)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등록거부 통보서**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4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 제3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은 사유로 논활용(논이모작)직접지불금 지급대상 등록이 거부되었음을 통보합니다.

거부 사유				
등록거부 내용				
등록 신청인	성명 (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소			
신청 내용	읍·면	리·동	지번 (임시지번)	신청면적(㎡)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직인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서명	결재권자	직위 (직급)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일련번호(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		
우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	전송()		/ 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별지 제9호 서식]

논활용(논이모작) 직불금 등록신청 내용에 대한 이의신청서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이의신청 내용>				
등록신청자 성명				
등록신청 농지 지번				
등록신청 농지 면적				
이의 신청 내용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5조에 따라 논 활용(논이모작) 직불금 등록신청한 자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이의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이의신청자 (인) ○○○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 이의신청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				

년 논활용(논이모작) 직불금 신청농지 이행점검표

담당	주무	소장(과장)	결 재

결재년월일 : 년 월 일

1. 신청인 인적사항

성명 (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농업경영체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휴대폰)	

2. 신청 내역 및 조사결과

소재지			공부상 면적 (㎡)	신청내역		조사결과				
읍·면·동	본번	부번		품목	면적 (㎡)	적합면적 (㎡)	부적합면적 (㎡)			비고 (불일치 사유 등)
						재배	휴경	폐경	기타	

※ 비고란에는 불일치 사유 및 면적 등 기재

3. 조사자 확인

○ 위와 같이 현지조사를 틀림없이 수행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조사일자 : 년 월 일	조사자 : (인)

4. 신청인 확인(필요시)

○ 등록신청 농지의 현지조사 결과 위와 같음을 확인합니다.		
조사일자 :	신청인 (인)	연락처 :

<사 진>

* 현지 조사표 하단 또는 뒷면에 부착

년 논활용(논이모작) 직불금 이행점검결과 통보서

1. 신청인 인적사항

성명 (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농업경영체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휴대폰)	

2. 신청 내역 및 조사결과

소재지			공부상 면적 (㎡)	신청내역		조사결과				
읍·면·동	본번	부번		품목	면적 (㎡)	적합면적 (㎡)	부적합면적 (㎡)			비고 (불일치 사유 등)
						재배	휴경	폐경	기타	
합계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9조에 따라 실시한 논활용(논이모작)직접지불제 이행점검 결과를 위와 같이 알려드리니, 이행점검결과에 이의가 있으신 경우에는 7일 이내에 동봉한 이의신청서(별지 제12호)를 농지소재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장·사무소장에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위 기간까지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년 월 일

직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 지원장·사무소장

논활용(논이모작) 직불금 이행점검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서

1. 신청인 인적사항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소		농업경영체등록번호	
			전화번호	

2. 이의신청 취지 및 사유

※ 사유 기재

논활용(논이모작) 직불금 사업시행지침에 따라 이행점검결과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이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이의신청자

(서명 또는 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 지원장·사무소장 (귀하)

구비서류 : 1. 이행점검결과 통보서

2. 이의신청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